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27
----------	-------

발의연월일 : 2023. 1. 4.

발의자 : 임이자 · 김승수 · 박대수
이종성 · 정희용 · 조은희
지성호 · 최영희 ·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
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
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
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
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
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을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를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이의신청)”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 일”은 “30일”로 한다.

제8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6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절차, 이의신청”을 “절차”로 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0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허가”를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도법」의 개정)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5조(「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복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를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를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신고를”을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

· 공고가”를 “다음 각 호의 허가 · 지정 · 인가 · 승인 · 인정 · 결정 · 면허 및 고시 · 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하천법」의 개정)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을”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2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협의”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환경

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6조(「수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
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
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
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인 · 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승인 · 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16.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제28조(인 · 허가등의 의제) ① --</p> <p>--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 허가등을 --.</p> <p>1. ~ 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 효과 및 처리기준 · 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p>

<p><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④ (생 략)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

한 사항에 대해서는 -----
-----.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 미리 -----

-----.

<후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p><u>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u></p> <p><u>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생 략)</u></p>	<p><u>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③ (현행 제5항과 같음)</u></p>
--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p> <p>① <u>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u>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p> <p>1. ~ 27. (생략)</p> <p>② <u>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u></p>	<p>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p> <p>① <u>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면-----</u></p> <p>-----</p> <p>-----</p> <p>-----</p> <p>-----</p> <p>-----</p> <p>-----</p> <p>1. ~ 2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16.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3조의3(의의신청) ① · ② (생략)

③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3(수의 자부담금 부과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
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①</u></p> <p><u>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u>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 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u>경우</u> <u>에는</u> 다음 각 호의 허가·면허 ·승인·해제·심사를 받거나 협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 11.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 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 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 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p>	<p>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① ----- ----- ----- ----- ----- ----- <u>경우</u></p> <p><u>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u> <u>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u> <u>항에 대해서는 -----.</u></p> <p>1. ~ 1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② ----- ----- ----- ----- ----- ----- ----- -----</p>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30일 이내-----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의제) ① (생 략)</p> <p><u>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 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 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신 설></p>	<p>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신고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p> <p>② · 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 ⑨ (생 략) <u><신 설></u></p> <p><u>⑩</u>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u>절차</u>, <u>이의신청</u>,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 ⑨ (현행과 같음)</p> <p><u>⑩</u>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p> <p><u>⑪</u> ----- ----- <u>절차</u>----- ----- -----.</p>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u>다른 법률과의 관계</u>)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u>다음의 허가</u>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u><신설></u></p>	<p>제5조(<u>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u>) ①----- -----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u>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u>이의신청</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8조(<u>이의신청 특례</u>)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u>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u>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14. (생략) <u><신설></u></p>	<p>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① <u>공원관리청이 공원</u> <u>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u> <u>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u> <u>·승인·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u> <u>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u> <u>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u> <u>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u> <u>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u> <u>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u> <u>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u> <u>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u> <u>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u> <u>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u> <u>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u> <u>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u> <u>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약)</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u>승인</u>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u><신 설></u></p>	<p>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승인</u></p> <p><u>하려는 경우에는 -----</u></p> <p>-----</p> <p>-----</p> <p>-----. <u><후단 삽제></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
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
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
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1. · 2.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 16. (생략)</p> <p>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p>	<p>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 ----- ----- <u>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u></p> <p>1. ~ 16.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후단 삭제></u></p>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생략)</p> <p><u>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 ⑥ (생략)</p> <p><u><신설></u></p>	<p>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p><u>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의 의제) 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의 의제) ① · ② (현행 과 같음)</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생 략)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현행과 같음) <p>③ ----- ----- ----- ----- <u>협의(제19조 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u>한다</u>) <u>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u>----- ----- -----.</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u>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u></p>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
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
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